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56호

「도로법」 제4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(해제)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접도구역 변경(해제)에 따른 지형도면변경(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)**

1. 접도구역변경(해제)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노선 번호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1	중앙고속도로	제55호선	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9번지 등 64필지	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	

※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(S=1:1,200) 게재생략

2. 접도구역 해제 사유 :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(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)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(해제)

3.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

○ 열람장소

- 한국도로공사 도로처

(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, 전화번호 : 054-811-2526)

-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

(주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374 , 전화번호 : 033-811-6441)
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.